62 수산식료품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난청

 성별
 남
 나이
 51세
 직종
 수산식료품 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 요

근로자 J는 1990년 4월부터 A사 B공장의 공무부 영선업무에 근무하였다. 퇴사하기 전 이명이 있었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으며, 2007년 12월 퇴사 후 2009년 3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직업성) 난청이 인지되었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1990년 4월부터 2007년 12월 퇴사 시까지 근로자 J의 주 업무는 냉동기 등기계가 고장나면 기계실이나 가공부에 가서 기계를 수리하는 영선업무였다. J가 근무한 A사 B공장은 2007년 C사로 매각되었으며 수산물가공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평가는 어렵다. 다만 2003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1공장과 2공장의 기계실 4명에 대한 누적소음 측정 결과는 79.2-81.1dBA이었으며, 동일 작업의 전회 측정 결과는 67.2-70.4dBA이었다. 2006년도 상반기에는 기계실 콤프레서의 경우 2명에 대한 누적소음량 측정 결과 82.1-83.7dBA이었다. 2007년도 상반기에는 동일장소의 측정 결과 70dBA이하이었고, 가공부(새우맛살기)의 경우에는 80.9-81.2dBA이었다. B공장과 유사한 D사 E공장의 소음측정 결과는 맛살공정의 계량/배합, 포장 및 살균포장 공정, 동그랑땡의 배합/성형과 포장공정이 80dBA를 초과했으나 노출기준 이하였다. 기계실의 콤프레서는 77-78dBA였다. 영선업무는 수리작업이 없을 시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현장작업시간은 하루 최소 2시간-최대 4시간을 잡을 수 있다. 이를 근로자 J의 작업과 관련하여 노출 소음을 추정하면 80dBA 이내로 판단된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J는 2003년에 귀가 안들리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청력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2008년 4월 타 사업장에 입사하고 2주만에 안전사고로 전신마취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이명이 있었으나 전신마취 후유증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뇌검사상 이상은 없었다. 현재 고막은 정상 소견을 보이며 2009년 3월병원 이비인후과의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에서 우측 >70 dB, 좌측 >80 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과거력을 참고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의심된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J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소음 노출수준이나 난청의 진행 경과로 볼 때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과거력과 병력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전의 청력장애와 수술 및 치료력이 있으며, 경과에따른 청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2003년과 2009년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비슷하거나 최근 검사 결과가 오히려 낮은 역치를 보이는 점 등은 소음이나 수술에 따른 영향이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4 | 결 론

근로자 J는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추정)으로 진단되었으나,

-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80 dBA 이내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되며,
- ②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입사이후에 발병하였다고 사료되나 2003년 장애평가시 결과와 거의 비슷하여, 수술과는 무관하며 그 원인은 불명이나,

근로자 J의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작업환경 및 산업의학적 평가를 통하여 상기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요인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128 ▮ 산업안전보건연구원